

# 예산총칙

2022년도 간주예산 4 차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7,750,169	21,832,505
일반회계	712,522,790	21,375,684
특별회계	15,227,379	456,821
기타특별회계	15,227,379	456,821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6,348,823	190,465
주차장 특별회계	6,248,962	187,46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74,121	23,224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140,085	34,203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254,816	7,644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60,572	13,81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493,507천원(일반 4,6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 81,893,50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